

임업·산림 공익직접지불제

임업 직불제란?

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
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

시행일

-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
- ※ 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임업직불제 종류

- 임산물생산업 직불금
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
- ※ 소규모 임가 직불금(0.1~0.5ha), 면적 직불금(0.1ha이상)
- ※ 지급상한면적 30ha
- 육림업 직불금(3ha이상)
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
- ※ 지급상한면적 30ha

지급대상 산지

- 2019. 4. 1. ~ 2022. 9.30.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
(지급제외 산지) 국·공유림, 타직불금 신청산지, 산지전용허가, 산업단지 등
- ※ 경영체 등록 : 지방산림청·국유림관리소
- ※ 지급신청 : 읍·면·동사무소

대상자 요건
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원 미만,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,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·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
(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)
- ※ 임산물생산업 -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
- ※ 육림업 - 산림경영계획 수립,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

